



여성가족부 | 복권위원회

미혼모·부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들어가며

출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를 준비했습니다.

C O N T E N T S

01 임신·출산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입소	4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5
산모건강관리	6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6
출산비용 지원	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

02 양육·생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9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9
보육료 지원	10
유아학비 지원	11
가정양육수당 지원	11
아이돌봄서비스	12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13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13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14
취약·위기가족 지원	15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5
드림스타트	16

03 시설·주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8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	20

04 교육·취업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22
자녀 교육비 지원	22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23
여성세로일하기센터	23
취업성공패키지	23

05 금융·법률

자산형성지원	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5
미소금융	26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27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27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28

부록

미소금융 관련 대출	29
4대공·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30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보육료지원 가능합니다	31



임신·출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입소

지원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등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산부 입소가능)〉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두리홈	02-363-5722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애란원	02-393-4725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마음자리	02-563-7420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마포애란원	02-711-4725		새싹들의집	031-457-4383
	도담하우스	02-449-8893		광명아우름	02-899-0152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성현원	051-545-9272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5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제주	애서원	064-773-2010

※ 기본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외, 공동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문의 해당 시설 및 지자체,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재가(在家) 미혼모·부자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거점기관 안내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7475-3015
2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02-704-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5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6
6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70-4204-6314
7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042-932-9934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03-9200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4-8612~3
11	충북	청주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5
12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3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14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659-4171
15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054-975-0831
16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5
17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4-725-7015

신청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산모건강관리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5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급

청소년 산모(만 18세 이하)의 경우 1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170만원 지원)

- 신청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1~6급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60만원
- 1~6급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합니다.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아동·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지원

신청문의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양육·생계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내용 2018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 추가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5.41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월 13만원)

지원내용 2018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단위: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청소년한부모가족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18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1순위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 등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나이에 따라 월 22만원~44만 1천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어린이집(보육료) *종일(07:30~19:30)기준

(단위:원/월)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441,000	388,000	321,000	220,000	220,000	220,000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16.7월부터 만 0~2세 아동을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법정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가능한 한부모) 이외 일반 한부모 및 조손가구가 종일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제출 필요(종일형 요청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교육과정·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2018년 지원금〉

(단위:원/월)

과정	지원금액	
	국·공립	사립
교육과정 지원금	60,000	220,000
방과후과정 지원금	50,000	70,000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포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듀콜센터(☎1544-0079)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포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은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 : 본인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 등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합니다.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간식,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보호

소득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7,800원)				종일제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2,712천원)	6,240원	1,560원	5,460원	2,340원	117만원	39만원
나형 85% 이하(3,841천원)	3,900원	3,900원	-	7,800원	85.8만원	70.2만원
다형 120% 이하(5,423천원)	2,340원	5,460원	-	7,800원	54.6만원	101.4만원
라형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56만원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대표번호(☎1577-2514)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만 18세 미만(공동육아나눔터) 자녀가 있는가정
- 지원내용**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문의(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 나눔터 관련 문의(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부처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 양곡할인지원(50%)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요금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전력공사(☎123)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전기요금(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 지원) 가스요금 감면	
환경부	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1577-88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요금 50% 감면 차상위계층: 이동통신요금 35%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각 이동통신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연 7만원) 스포츠포스트이용권(월 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문화누리카드 (☎1544-3412, www.mnuri.kr) 스포츠포스트이용권 (☎02-410-1298~9, http://svoucher.kspo.or.kr)
법무부	과태료 50% 이내 감경	법무부 또는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차상위계층: 자동차검사수수료 50% 감면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1577-0990)
지자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합니다.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생계·의료급여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문의(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바랍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북한이탈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위기가족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02-3479-7600)
홈페이지 www.familynet.or.kr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244,800원), 27시간(월 275,400원)
-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임산부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원합니다(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경우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 환경·발달 상태를 기준으로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 :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02-6901-0299)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시설유형		입소대상	입소기간 (연장)	
모자 가족 복지 시설 (48개소)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부자가구	기본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 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부자 가족 복지 시설 (4개소)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부자가구	기본생활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 지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 지원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62개소)	미혼의 임산부나 미혼모자 가족	기본생활 지원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공동생활 지원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일시지원 복지시설 (11개소)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시설비공개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신청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2년 원칙, 2년 연장 가능)

신청문의

권역	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02-363-5722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031-216-9081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강원	원주건강가정지원센터	033-765-8314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042-585-3004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070-7725-6909
충남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3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234-6053
전북	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	063-280-2522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3-355-8042
경북	포항건강가정지원센터	054-244-9701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4-833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주택 유형	순위
영구임대	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5년·10년 공공임대	특별공급(기관추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1순위
전세임대	1순위

지원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각 시·도 도시공사

거주지 시·군·구청



교육·취업



일자리를 찾고계신가요?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지원대상 학업이 중단된 한부모에게 학업 지원

<위탁 교육기관 현황>

연번	시도	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나래대안학교(애란원)	02-393-4720
2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3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4	인천	자모원(바다의별대안학교)	032-772-0071
5	광주	인애복지원	062-651-8585
6	경기	홀트고운학교	031-216-9081
7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8	충남	새소망의집	041-568-0691
9	전북	민들레학교	063-283-1356
10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11	경남	로뎀학교	055-292-4747
12	제주	애서원(무궁화아카데미)	064-773-201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및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문의 해당시설 및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메뉴 <http://www.mogef.go.kr>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교육부(☎1544-9654)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내용

장학금	대학재학 시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학자금 대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대상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지원내용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현황·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사후관리지원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신청문의 지역별 센터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 (<http://saeil.mogef.go.kr>)
각 센터별 문의 후 신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1544-119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 만 18세~만 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 동안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단계 : 취업상담(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25만원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 취업의욕, 능력증진(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200~300만원의 훈련비 지급)
- 3단계 : 집중취업알선(취업시 최대 150만원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1350)

이외에도 자활근로, 정부지원일자리 등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 자활근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민센터 신청
- 정부지원일자리 : 일모아 (www.ilmoa.go.kr)



금융·법률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
이제 법 전문가가 대신해 드립니다.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드립니다.(월 10만원~33만원 지원)
- 신청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매월 5만원~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 5~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지역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2018년 신청)

- 지원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7.12.31. 현재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 부양부모 : 만 70세 이상 부 또는 모(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소득요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구분	연간 총 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85만원
홀별이 가구	2,100만원 미만	200만원
맞별이 가구	2,500만원 미만	250만원

자녀장려금(2018년 신청)

- 지원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7.12.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지원내용** 연간 총 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의 가구에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 지급

- 신청문의**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및 세무서 신청(국세청 콜센터 ☎126)



미소금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종류〉

상품명	대출한도	대출기간	금리
창업자금	7천만원	6년 이내	4.5%
운영자금	2천만원	5.5년 이내	4.5%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5.5년 이내	4.5%
긴급성계자금	1천만원	5년 이내	4.5%
취업성공대출	3백만원	3년 이내	4.5%
대학생·청년햇살론	12백만원	13년 이내	4.5%
교육비지원대출	5백만원	6년 이내	4.5%
취약계층자립자금	12백만원	6년 이내	4.5%
취약계층교육비대출	5백만원	6년 이내	4.5%
취약계층임차보증금대출	2천만원	2년 이내	4.5%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햇살론, 바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kinfa.or.kr>)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6개월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급받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에 의한 한부모가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구비 필요
*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지원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가정 등 이혼전·후 부부와 아동
- 지원내용** 이혼전·후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이혼상담(자녀양육비·면접교섭권 등), 부부·부모교육, 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문의** (서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957-0760)
(부산)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47)
(대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
(인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032-765-6966)
(광주) 광주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69-0072)
(대전) 대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2-252-9989)
(울산) 울산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2-274-3185)
(경기)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전남)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생계자금을 최대 12백만원 이내로 지원(연 금리 3.0%)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미소금융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자녀의 교육자금을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연 금리 4.5%)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미소금융 취약계층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또는 3개월 이내에 거주 예정인 자 중 다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주거자금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연금리 2.5%)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문의	제도문의 : 문화재청 공능문화재과(042-481-4909)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보육료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담당자용)

- 수진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과 '아기'를 함께 쓰세요(이름이 있는 경우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란 기재방법 : 남·여 구분(3 또는 4) 기재 후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주세요
 - * 서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 쌍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아이 1, 둘째아이는 2로 기재

(예시1) 2016. 1. 1. 출생한 남아의 경우

구분	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1601013000000
서면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160101-3

- 처리근거 : [복지부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 p.391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담당자용)

의료급여전산번호 시스템을 이용 의료급여전산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지원 가능합니다.

① 보육사업 안내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자격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2.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②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방법

출생신고 완료전인 미혼부 자녀는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자'로 적용

* 자료구분(4)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⑦	: 성별(남: 1, 3 /여: 2, 4)
①~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1, 여: 2)
③		: 자료구분(4) 2000년대 출생(남: 3, 여: 4)
④~⑥		: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2000년 00, 2007년 07)
	⑩~⑬	: 일련번호

- 처리근거 : 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80p 참고

전화
상담

한부모(미혼모·부)상담전화

1644-6621

이용시간

월~금 08:00~22:00

토요일 09:00~18:00

온라인
상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용

www.mogef.go.kr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 복권위원회